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20242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2024221 판결

서울회생법원 2022. 5. 11 선고 2021가합10140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A의 법률상 관리인
B

피고, 항소인 K 주식회사(변경 전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더온 담당변호사 최민규

변론종결 2022. 11. 17.

판결선고 2022. 12. 8.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2. 5. 11. 선고 2021가합10140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1. 2. 2. 접수 제100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 ‘대환에 불과하므로’를 ‘사실상 대환에 불과하므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공동원고 및 공동피고 부분 제외).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문호, 판사 이양희, 판사 김경애

별지